

2018 생활체육 혁신사업 운영계획(안)

- 경기사랑 클럽리그 -

□ 사업목적

- 생활체육의 경기도형 모델 개발 및 자율 클럽리그 운영으로 도민의 건강·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저변확대
- 시·군별 특성을 반영하고 유소년·청소년·대학이 연계되는 지역단위 자율 클럽리그 발굴·육성으로 건강한 사회인 양성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8년 4월 ~ 11월(8개월간)
- 사업장소 : 경기도 일원
- 운영종목 : 거점시설 별 자율선택(클럽운영 종목)
- 운영개소 : 거점센터 4개~8개소, 생활체육 클럽 60~80개소
- 지원자격 : 회원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 *거점시설 확보 및 시설사용협약 必
- 선정기준 : 사업계획, 거점시설 확보, 혁신가치 반영 등
 - ※ 제한사업 : 기존 지방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사업
- 사업내용

구 분	내 용	비 고
자율리그	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클럽 대상 리그 운영 - 종목 : 자율선택(리그운영 가능 종목) - 리그일정은 장소나 클럽여건에 따라 자율 설정(매주/매월)	
클럽운영	지역 내 클럽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 - 종목 : 자율리그 운영종목 - 매주 1~2회 이상 수업	

- 주 최 : 경기도체육회
- 주 관 : 회원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

□ 진행절차

①	사업 계획 수립 《1월》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기도체육회 ● 운영지침 수립(사업운영 방향 및 지원내용/규모 등)
②	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《2월》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모집공고 안내 ● 홈페이지, 시군청 및 체육회 안내 등 ■ 사업계획서 제출 ● 접수처 : 경기도체육회 체육지원과 ※ 종목단체/시·군체육회 → 경기도체육회
③	심사/선정결과 공지 《3월》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기도체육회 ● 심사 : 생활체육위원회 심의 ● 공지 : 공문시행
④	사업설명회 《3월》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기도체육회 ● 대상 : 종목단체 및 시·군 담당자, 매니저 등 ● 내용 : 사업설명 및 사업비신청/집행/정산 관련 등
⑤	사업비(보조금) 신청 《3월》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관단체(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) ● 보조금신청서, 세부계획서, 통장사본 첨부
⑥	사업비 검토/교부 《3월》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기도체육회 ● 매월지급 : 강사, 매니저수당 ● 일괄지급 : 용품구입비, 이벤트 운영비 등
⑦	사업운영/평가 《4~12월》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리그(월2회 이상), 클럽(주1~2회) ● 기간 : 2018년 4월~11월(8개월간)
⑧	실적 보고 《매월초》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·군체육회 ● 실적보고 : 매월 5일 이내 ※ 클럽 → 거점센터 → 주관단체 → 경기도체육회
⑨	결과 보고 《사업종료 후》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《별첨5》 ※ 거점센터 → 주관단체 → 경기도체육회
⑩	정산 확정/반납 《사업종료 후》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기도체육회 → 사업정산 확정 통지 ■ 주관단체 → 집행잔액 반납

※사업진행 중 일정 변동 가능

□ 세부추진계획

○ 사업공고

가. 공 고 일 : 2018년 2월 초 *선정개소 미달 시 재공고

나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문서발송, SNS 등

○ 자격대상

가. 사업신청대상 : 회원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

나. 거점시설 확보 및 시설사용 협약이 완료된 단체

다. 주관단체에서 리그운영 대상 자체 선정

· 종목선정 :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종목 자체 선정(리그 운영이 가능한 종목)

· 대상선정 : 관내 클럽 10개소 내외(인근지역 포함가능)

○ 사업신청서 제출

가. 제출서류

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(산출내역/연락망 포함)

③ 시설이용 협약서(거점시설)

나. 제출방법(시군체육회 → 경기도체육회)

· 제출기간 : 2018. 2. 19(월) ~ 23(금)

· 제출방법 : 공문 이메일 접수(hn2010@ggsc.or.kr)

· 담 당 자 : 경기도체육회 체육지원과 이희나(031-250-0452)

□ 심사방법

○ 심사단계

가. 1단계 : 요건심사

· 자격기준 및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

나. 2단계 : 생활체육위원회 심사

· 평가기준을 근거로 요건별 정량평가

※ 개소별 지원액 → 소요예산 참조

다. 3단계 : 결과공지

· 공 개 일 : 2018년 3월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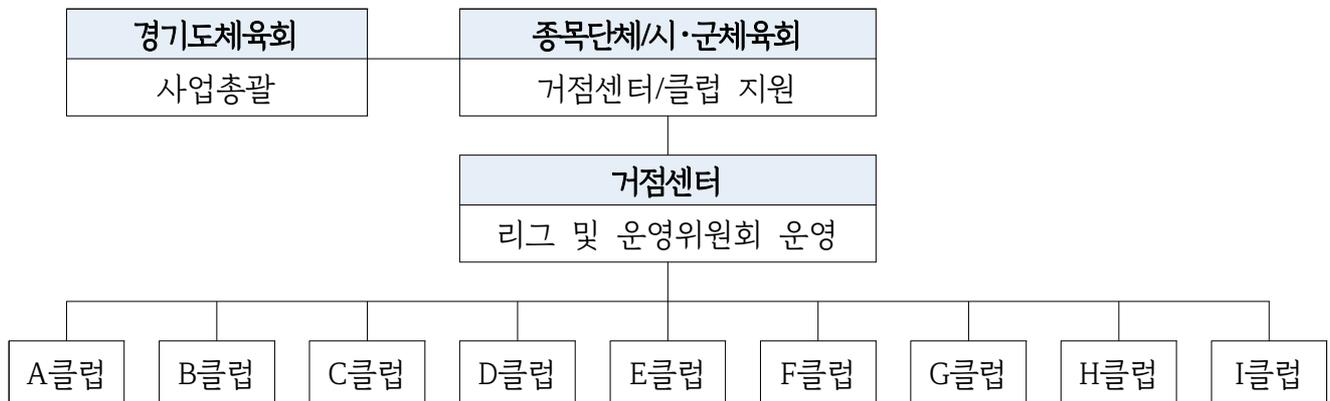
· 공개방법 : 홈페이지 및 문서

○ 심사기준(안) : 총점 100점

구 분	평 가 내 용	배점
혁신가치 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혁신사업 가치 반영(지원봉사, 기부문화, 가족참여, SNS활용 등) - 빈약(10), 미흡(15), 보통(20), 양호(25), 우수(30) 	30
사업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체계, 안전, 현실성, 목적 부합 여부 등 - 빈약(4), 미흡(8), 보통(12), 양호(16), 우수(20) 	20
시설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설확보 여부 및 지역특성 등 - 빈약(10), 미흡(15), 보통(20), 양호(25), 우수(30) 	30
사업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운영횟수, 참여인원, 참여대상(배려계층 우선지원) 등 - 빈약(4), 미흡(8), 보통(12), 양호(16), 우수(20) 	20

□ 주요업무

○ 조직도



○ 역 할

구 분	역 할	비 고
경기도체육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계획 수립 · 사업총괄운영 및 지원관련 업무 · 사업설명회 및 평가회 개최 · 사업홍보 등 기타업무 	
주관단체 (종목단체/ 시·군체육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계획수립 및 거점시설 확보 · 리그운영 및 클럽 운영지원 관련(용품구입, 수당지급 등) · 운영실적 보고(매월) → 도체육회(인트라) · 수시 현장 점검 	

구 분	역 할	비 고
거점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리그 운영 총괄(리그 운영 시 거점센터 내 매니저 상주) ·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성 : 주관단체 담당자1, 매니저1, 학교관계자 2(교수, 교사 등)을 포함하여 7인 이내 - 리그 운영관련 지침 및 규정(룰) 마련 및 기타 운영자문 등 · 운영비 청구(매니저 → 주관단체) · 운영실적 취합(매월) 및 보고 → 주관단체 · 리그 자원봉사 배치 및 운영 · 이벤트 운영 관련 사항 	주관단체와 거점시설간 사용협약 必 (매니저 배치)
강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클럽별 생활체육 교실 현장지도(리그종목) · 클럽내 캠페인 운영(ex. 고운말쓰기 운동 등) · 클럽운영 자료 작성 및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업일지, 출석체크, 사진촬영 등 · 참가자 업무 공조 등 	

□ 운영방법

○ 클럽운영(생활체육 교실)

가. 대 상 : 유소년(유치원 포함), 청소년, 여성

나. 운영종목 : 자율선택(리그운영 가능한 단체 종목)

다. 운영개소 : 10개소 내외(거점시설별) *총 60~80여 개소

라. 운영시간 : 주 1~2회, 1회당 1시간 이상(클럽별 최대 월 8회 운영)

- 시간 및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실시

-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 미운영시 대체 수업 진행 *당일 2회 연속 불가

마. 강사 배치

- 주관단체와 계약체결

- 해당종목 자격증 소지자 및 은퇴선수 우선채용(자격증 미소지자 기관장 추천서 제출)

바. 운영회비

- 자율적으로 자체 회비 운영가능(별도 통장 개설)

☞ 자체회비는 운영비로 활용(보험가입, 대관료 등) *강사 추가 수당 지급 불가

사. 캠페인 운영

- 신체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 및 인성교육, 스포츠정신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클럽 내 캠페인 운영 必(ex. 고운말쓰기 캠페인 등)

○ 리그운영

가. 운영종목 : 주관단체 자율 선정(클럽 운영종목)

- 가치중심의 신체활동으로 정규 종목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함(ex, 뉴스포츠 등)

나. 운영횟수 : 거점센터, 종목, 클럽여건에 따라 자율 *리그 1회 당 2경기 이상 진행

다. 대 상 : 동 사업에 참여하는 클럽팀

라. 운영방법

- 리그운영 지침 및 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련

- 순위제 등을 배제하고, 사회성발달 및 인성함양 등 가치중심의 리그 운영

- 거점시설과 사용협약 후 정기적 리그운영(리그운영비로 대관비 지급 가능)

☞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월간, 분기별 일정 수립 후 사전공지

- 클럽관리자(교사 등) 및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경기운영

☞ 지역내 은퇴선수, 체육교사 및 학부모,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리그운영 봉사자 모집

- SNS 활용을 통해 리그 참여 클럽 간 소통 및 활성화 유도

○ 스포츠 이벤트

가. 운영시기 : 연1회 이상 자율

나. 대 상 : 클럽 참여자

다. 운영내용 : 엘리트선수 초청강습, 경기관람, 운동회 개최 등

라. 지원내용 : 세부내역 자율편성

구 분	편성가능 항목(예시)	비 고
엘리트선수 초청강습	· 강사수당 · 운영비(대관비, 보험가입비, 현수막, 간식 등)	
경기관람	· 차량임차비 *유류비 집행불가 · 운영비(입장권, 보험가입비, 현수막, 간식 등)	
운동회 개최	· 용역비(진행 및 음향 등) · 운영비(대회용품, 보험가입비, 현수막, 간식 등)	
기 타	·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스포츠 이벤트 운영 ex, 수상스키 등	

마. 후 원 : 직장운동부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의 후원(경기관람권, 간식 등) 등을 확보하여 이벤트 운영(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必)

□ 안전대책

- 스포츠안전 보험 가입
 - 가. 리그운영 시 스포츠안전재단 보험가입
 - 나. 클럽운영(강습) 시 자체회비 활용하여 보험가입은 또는 개인보험 활용
- 리그운영 시 안전요원 및 구급요원(구급차 등) 배치
- 지역별 지정병원 확보 및 비상연락망 구축
- 강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구급함 지원(클럽별)

□ 사업비 지원 및 정산

- 항목별 지원내용

(단위 : 원)

구분	지원항목	지원금액	지원내용	지급시기	비고
리그 운영비	매니저수당	3,200,000	400,000원×8개월	매월	월별지급, 소득공제 必
	리그운영비	16,000,000	500,000원×4회×8개월	매월	
	스포츠이벤트	2,000,000	강사수당, 현수막, 보험료, 임차료(버스 및 시설 등), 관람료 등	3월중	
클럽 운영비	강사수당	3,200,000	50,000원×8회×8개월	매월	월별지급, 소득공제 必
	용품구입비	500,000	해당 종목 용품구입비	3월중	
	운영비	300,000	현수막 제작, 구급함 구입 등	3월중	

※ 사업운영 시 경기도 재정후원, 경기도체육회 주최사업임을 명시
- 현수막 제작(안)



- 2018 경기사랑 클럽리그 -

○○시 '청소년 농구클럽'



- 일시 :
- 주최 : 경기도체육회
- 후원 : 경기도

- 장소 :
- 주관 : 시·군체육회/종목단체

○ 정산서류

가. 결과보고 : 결과보고 양식 별첨

나. 지출증빙 : 지출결의서 및 내부결재, 영수증*, 견적서, 관련사진

* 영수증 : 카드결재 시 카드영수증

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

다. 용품구입비의 경우, 사업시작 전 용품구입 및 전달(인수증 제출 必)

○ 정산지침

가.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 본회 정산 확정 통보에 따라 계좌로 반납

※ 정산보고→정산서 검토 및 확정·반납 통지→집행잔액 반납

나. 사업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

다. 모든 사업비는 체크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

※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·현금매출영수증은 정산 불가

※ 현금 인출 후 사업비 집행 불가

※ 사업기간에 맞게 지출증빙 제출

※ 물품 사진, 내역서(견적서) 등의 사본 첨부하여 제출

라. 매니저 및 강사 수당은 개인계좌로 개별입금

마. 지출증빙에 일련번호 기입 및 원본대조필 날인

□ 행정사항

○ 매니저 및 강사의 배치

가. 자격기준

-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경험이 풍부하며, 남다른 봉사정신을 갖춘 자
- 사업목적을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자

나. 자격요건(강사)

- 해당종목 자격증(생활체육지도자 등) 소지자 및 은퇴선수
(자격증 미소지자는 시·군체육회장 추천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)

다. 배치방법

- 고용인(주관단체장)과 피고용인(매니저, 강사) 간 계약서 작성
- 사업취지, 안전사항 등 교육 후 현장 배치
- 강사는 반드시 참가자 출석체크 및 수업일지 작성
- 지도자가 부득이하게 수업에 불참할 경우 대체 인력을 배치·운영

○ 실적보고

가. 제출사항 : 클럽 및 리그운영실적

나. 제출기한 : 익월 5일까지

다. 제출방법 : 인트라넷 댓글제출 *시행문 제외

○ 결과보고

가. 제출사항 :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(양식 별첨)

나. 제출기한 :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(2018.12.15.까지) 제출

다. 제출방법 : 공문서 우편제출(지출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)

○ 기타사항

가. 사업운영 변동사항 발생 시(운영시간, 장소, 강사 등) 필히 본회 승인 후 실시(변경사유 첨부)

나. 클럽 운영 시 반드시 강사가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사업목적 및 주의사항 등 전달

다. 주관단체는 현장 운영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체크

※ 수업당일 교실전경 사진 첨부하여 일지 작성 必

(사진에 날짜가 기재되는 모바일폰 어플 활용)

※ 일정 변경 시 본회사전 통보 必, 수시 현장체크 예정

(수업 미실시에 따른 현장적발 시 사업비 반납 및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)

라. 지속적인 참여인원 감소 및 최소 인원 운영 시 대상 변경 검토

참 고 자 료

- I. 보조금 사용 및 정산지침
- II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
- III. 보조금 지원 신청서 양식
- IV. 클럽운영 관련 양식
(수업일지, 출석부 등)
- V. 월별 실적보고 양식

보조금의 사용 및 정산지침

보조금의 사용

1) 예산집행 기간 : 2018. 4월 ~ 11월

- 예산집행은 보조금 교부시점부터 사업종료일 이내에 사용 원칙

2) 예산집행 기준

- 예산집행은 반드시 예산목적의 부합성, 예산과목의 적합성, 사업계획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
- 예산집행은 예산신청 과목 범위내에서 하여야 함
 - ※ 본회에 예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
 - ※ 생활체육 혁신사업 편성 가능 항목

과 목		편성 가능항목	비 고
리그 운영비	리그운영비	수당(심판, 운영), 대관비, 구급차, 보험가입비 등	
	스포츠이벤트	강사수당, 시설임차비, 제작비(현수막, 홍보물 등), 용품구입비(소모품) 등	
클럽 운영비	용품구입비	해당종목 운동용품, 경기용품 등 ※ 개인품목 및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	
	클럽운영비	현수막, 구급함, 식수 등	

- 예산의 집행은 사업비 통장에 등록되어 있는 체크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가 원칙이며, 현금집행 및 개인카드 사용 금지
- 간이영수증 및 금전등록기·현금 매출 영수증은 정산 불가
- 사업기간에 맞게 지출 증빙 제출(사업기간 외 집행 불가)
- 물품 사진, 내역서 등의 사본 첨부하여 제출
- 매니저, 강사, 심판, 운영요원 등 수당은 개인계좌로 개별입금(현금지출 불가)

- ※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, 자격증 등의 첨부서류 제출 必
- ※ 수당지급 대상자의 原소속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관의 근로기준 시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수당지급과 관련한 해당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
- ※ 수당 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 必(관련서류 제출)
- 계좌이체에 따른 은행 이체수수료는 보조금 사용 불가
- 지출증빙에 일련번호 기입 및 원본 대조필 날인

3)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, 보류

- 동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보조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
-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불응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경우
- 자체소유 또는 위탁운영 중인 건축물, 장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없음
- 지원사업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를 통한 사업추진방식이 아님에도 사업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재교부(위임, 협약 등)하여 사업을 추진해서는 아니 됨
- 기타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

4)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

-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
-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는 본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름

5) 잔액반납

- 집행잔액 및 정산 불인정액, 이자는 본회의 정산 확정통보가 있는 후 즉시 반납
- 반납 후에는 관련서류 제출(통장사본, 이체확인서 등)

정산지침

- 1) 증빙서류는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집행내역 순으로 편철
 - 항목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내역 총괄표 작성
- 2) 사업비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사본 제출
- 3) 지출증빙 서류
 - 카드지출 : 지출결의서, 내부결재 문서, 카드영수증, 지출증빙사진(용품), 견적서, 비교견적서(타견적) 등 기타서류
 - 계좌이체 : 지출결의서, 내부결재 문서, 계좌이체증, 서명부(강사비), 견적서, 비교견적서(타견적),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서류
- 4) 집행내역별 증빙자료(추가)

집행내역	증빙자료	비고
수 당	계좌이체증, 서명부, 이력서, 통장사본, 수업일지 등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	지도자, 심판, 운영요원 등
용품비	카드영수증, 견적서, 비교견적서(타견적), 사업자등록증(납품업자), 인수증(인수자), 용품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	용품관리자 지정 및 관리 철저(참가자 등 개인지급 불가)
회의비	카드영수증, 참석자 명단, 증빙사진, 회의록 등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	
홍보비 (현수막)	카드영수증, 견적서, 비교견적서(타견적), 게첨 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	
급량비	카드영수증, 간이영수증(내역), 식사사진 등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	※ 주류 집행불가
보험비	계좌이체증, 견적서, 보험가입증, 사업자등록증, 대상자명단 등 기타서류를 정산서에 제출	

별첨 2-1

2018 생활체육 혁신사업 공모신청서
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명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기간	2018년 4월 ~ 11월(8개월간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거점시설	시설명(주소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참가클럽	○○개 클럽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장소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담당자			직통번호	
			핸드폰	
			이메일	
<input type="checkbox"/> 총사업비 (천원)	총사업비	보조금액	자부담액	기타
위와 같이 2018년도 경기도 생활체육 혁신사업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단 체 명 (직인)				
불임 1. 사업계획서 1부 2. 거점센터 협약서(시설사용 협약) 1부				

2018 생활체육 혁신사업 운영계획(안)

1. 목 적

-
-

2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
- 장 소 :
- 대 상 : ①유소년, ②청소년, ③여성 *배려계층 대상 여부 표기
- 운영종목 :
- 거점센터 : 시설명(주소)
- 모집인원 : 클럽별 00명
- 주 최 : 경기도체육회
- 주 관 : 시·군체육회
- 후 원 : 경기도

3. 추진계획

추진일자	추진사항
`00.00.	기본계획(안) 수립
`00.00.	종목 선정 및 클럽 모집
`00.00.	
`00.00.	
`00.00.	
`00.00.	

4. 세부 운영계획

○ 리그운영

- 운영종목 :
- 장 소 : *거점센터 협약서(별첨)
- 운영횟수 : 주 00회
- 운영일정 : 매주 토요일 10:00~12:00
- 매니저현황

성명(생년월일)	성별	주소	연락처	비고

○ 클럽운영

no.	운영시간	장소(주소표기)	모집 인원	캠페인 활동	비고
1	매주 수/토 08:00~09:00	장소 : 주소 :		ex, 고운말 쓰기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
※ 지도자 채용 및 배치 계획 추후 제출

○ 스포츠이벤트

- 운영계획

프로그램명	일시	장소	참여인원	비고
ex. 경기관람, 운동회 등	7.11(토) 08:00~09:00		○○명	

- 지역사회 후원계획 :

○ SNS활용방안

구분	주소(URL)	활용방안	비고
 페이스북		ex, 사업홍보	
 유튜브		리그 경기	
 블로그		사업참여자 소통 (대진일정 알림 등)	

○ 클럽 및 참가자 모집 방법

-
-
-

○ 클럽 및 리그 관리방안

-
-
-

○ 안전대책

-
-
-

5.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항 목	금 액	산 출 내 역(원)
총 계			=
리그 운영비	매니저수당		=
	리그운영비		=
	스포츠이벤트		=
클럽 운영비	강사수당		=
	용품구입비		=
	운영비		=

* 스포츠 이벤트 및 용품구입비 구체적 항목 명시

시설사용 협약서(예시)

(주 관 단 체)와 (거 점 시 설)은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원하는 「생활체육 혁신사업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1. (주 관 단 체)와 (거 점 시 설)은 지역사회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협약된 기간에는 (주 관 단 체)에 우선 대관한다.

☞ **협약기간 : 2018. 4월 ~ 11월 매주 토요일 10:00~12:00**

2. (주 관 단 체)는 (거 점 시 설)에 시설사용료(금100,000원)을 매월 00일 까지 (거 점 시 설)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☞ **지정계좌 : ○○은행 111-2222-3333, 예금주**

3. 유망선수 육성지원금은 금0,000,000원(상당의 운동용품)으로 하며, 만 1년 이내 선수방출 또는 이탈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(육성지원금)를 반납한다.

2018. . .

협약대상자

기 관 명

(주소)

대표자

기 관 명

(주소)

대표자

(직인)

(직인)

별첨 3

보조금 지원신청서

사 업 명	2018 생활체육 혁신사업			
사업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▪ 		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사업기간 : ▪장 소 : ▪대 상 : ▪운영종목 : ▪운영개소 : 거점시설명 / ○개 클럽 ▪주 최 : 경기도체육회 ▪주 관 : ○○○ ▪후 원 : 경기도 			
보조사업 소요경비 (천원)	총사업비	보조금액	보조사업자 부담금	보조비율(%)
신 청 인	단 체 명			
	대 표 자		전화번호	
	계좌번호		은행명	
	주 소			
<p>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</p> <p>2018. 03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○○○○○장 (인)</p> <p>경기도체육회장 귀하</p>				
<p>붙임 1. 사업계획서 1부.</p> <p>2. 통장사본 1부.</p>				

별첨 4-1

생활체육 혁신사업 ○○○ 클럽 수업일지

일시/장소	2018.4.28(금) / 금곡초			강사명	홍길동		
근태보고	시작시간			종료시간			
	14:00			15:00			
회차/종목	회차	1	종목				
결석자 (결석사유)	정원	20명	지각	2명	결석	1명	
수업내용							
사진							
※ 날씨가 기재되는 모바일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요망							
기타사항							

※ 자체보관(본회 요청 시 제출)

별첨 4-2

생활체육 혁신사업 ○○○ 클럽 출석부

장 소 :

지 도 자 :

운영시간 :

일차 순번	성명	성별	계	/	/	/	/	/	/	/	/
총계											
1											
2											
3											
4											
5											
6											
7											
8											
9											
10											
11											
12											
13											
14											
15											
...											

※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 시 첨부

별첨 5

□ 리그운영 실적보고

시·군	종목	운영장소	운영시간	합계		4월		5월		6월		7월		9월		10월		11월		
				클럽수	인원															
합계																				

□ 클럽운영 실적보고

시·군	종목	운영장소	지도자	운영시간	합계		4월		5월		6월		7월		9월		10월		11월	
					횃수	인원	횃수	인원	횃수	인원										
합계																				

※ 엑셀양식으로 작성(양식 별도 송부)